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第1條(目的) 이 法은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4>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第3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

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개정 2007.1.24>

1. 濟州4·3事件 真相調查를 위한 國內의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真相調查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 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真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07.1.24>

1. 犠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가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4]

第5條(不利益 處遇禁止) ①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犠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犠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年 이내에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聯機關

또는 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國家의 政府와 성실히 交渉하여야 한다.

第7條(眞相調查報告書 작성)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月이내에 濟州4·3事件眞相調查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眞相調查報告書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眞相調查報告書作成企劃團을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犧牲者를 慰靈하고 歷史的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教育의 場으로 활용하며 慰靈祭禮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史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4]

第9條(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政府는 犧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の 지급범위와 금액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犧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施行日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犧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1조(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4]

제12조(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14조(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4]

#### 附則 <제6117호,2000.1.12>

이 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부칙 <제8264호,2007.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

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